[별지 제18호서식]

## 교습비등 게시표

(제8조 관련)

2023년 4월 1일

현재

교습과정	교습 과목	정원 (반당)	총교습 시간(분)	교습 기간 (○월)	교습비 (원)	기타경비		총교습비
						구분	금액(원)	(원) [교습비+ 기타경비]
미술	고급2 고급3 고급4 고급5 고급6 중급2 중급3 중급4 중급5	10 10 20 40 50 10 10 20	1920분 2880분 3840분 4800분 5760분 1920분 2880분 3840분 4800분	4주(월)	400,000 550,000 700,000 850,000 1,000,000 400,000 500,000 650,000 800,000			400,000 550,000 700,000 850,000 1,000,000 400,000 500,000 650,000 800,0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2023년 4월 1일 학원(교습소)설립·운영자(교습자) : (주)티움아트 (서명 또는 인)

- 주: 1.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 2. 게시는 학원·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 3. 기타경비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